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강화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6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평가 및 공시	3
2. 의결권 자문기관 등록 및 공시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29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평가 및 공시

-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의결권 행사 내역,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6장의2 수탁자 책임</u> <u>제33조의3(수탁자 책임) ① 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다하여야 한다.</u> <u>②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u> <u>③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u> <u>1. 수탁자 책임 정책</u> <u>2.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 지침</u> <u>3.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u> <u>4.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u>

현행	개정안
	<u>5.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u> <u>6. 그 밖에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u>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steward)로서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에 영국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였음.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에 금융위원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現 한국ESG기준원) 등의 주도로 민간 자율규범 형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음.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7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을 포함하여 총 257개 기관투자자 등¹⁾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4개 연기금, 4개 보험사, 63개 자산운용사, 74개 PEF운용사, 12개 신탁기관(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등), 87개 벤처캐피탈, 5개 의결권자문사 등

□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2017년 18개, 2025년 말 기준 249개), 민간 기관투자자²⁾가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증가(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전 평균 약 1.5% → 참여 후 약 4%)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³⁾.

그러나, 참여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고, 일부 이행 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개별 기관 차원에서만 공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⁴⁾.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의결권 행사내용의 공시의무 대상인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를 말함.

3) 2025, 황현영·김선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p. 3 ~ p.5.

4) 2025. 12. 26. 한국ESG기준원 보도자료 참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그 활동 결과를 투자자들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현재 민간 자율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수탁자 책임 이행 의무 및 점검·평가, 공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적인 규범형식이 아니라 자율성에 기반하여 참여 및 이행을 요구하는 연성규범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 자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26. 7.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⁵⁾.

또한,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개정된 바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이행 점검 및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⁶⁾.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추이도 함께 고려하여 법제화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공시·보고·평가 등에 대한 법제화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용·수준 등을 강행규범화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둘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로서 책임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 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5) 2026. 7.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 마련”

6) 2026. 3.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를임7).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고객
이 위탁한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도 투영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금융회사 자체의 지배구조보다는 금융회사
가 투자하는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가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의 체계와 다소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
다는 점, 가장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⁸⁾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반면, 고
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지 않는 여신금융업자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 법률에 수탁자 책임 이행에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
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
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에서는 집합투자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삭제 <2013. 5. 28.>

2. 삭제 <2013. 5. 28.>

3. 삭제 <2013. 5. 28.>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투자자문업자, 신탁업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원칙 및 이행 등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셋째,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의 이행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행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¹⁰⁾도 발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는 22개국이고, 그 중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일본, 대만 등 3개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0) 의안번호 22168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 2. 12.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국가인데¹¹⁾, 영국은 비영리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공적연금관리기관에서, 대만은 증권거래소에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평가하는 방안은 기업경영 및 주주활동의 자율성 측면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회계·감사·지배구조 관련 비영리규제기관으로 형사처벌·금융시장행위 제재권한 부재(외부감사 관련 감독업무 수행), 일본은 공적연금(GPIF), 대만은 증권거래소가 점검

2. 의결권 자문기관 등록 및 공시

-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미공시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4(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 등) ①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u> <u>1. 의결권 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u> <u>2.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u> <u>3.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u> <u>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u>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u>
1. ~ 24.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 ----- --.
<신설>	1. ~ 24. (현행과 같음)
25. · 26. (생략)	<u>24의2.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 26. (현행과 같음)
1. ~ 8의2. (생략)	② ----- ----- -----.
<신설>	1. ~ 8의2. (현행과 같음)
9. · 10. (생략)	<u>8의3.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u>
③ · ④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결권자문기관은 주로 기관투자자에게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책임 있게, 그리고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에 대한 분석 등을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며,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의결권자문기관도 민간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에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자문기관의 활동이 수탁자 책임 활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¹²⁾.

□ 각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의 적극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두루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결권자문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문제, 자문 대상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¹³⁾.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공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의결권자문기관의 투

1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2017. 6., p.14.

13) 지난 제20대국회에서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 12. 27.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7799)이 발의된 바 있음.

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결권자문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한 점검의 토대가 되고, 의결권자문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음.

유럽의 경우 2017년, EU 제2차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 II)¹⁴⁾에서 의결권자문기관이 의결권 자문과 관련한 방법론, 주요 정보 출처, 절차,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결권자문기관 현황을 보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일부 해외 의결권자문기관 외에 국내 주요 의결권자문기관의 수는 4개 정도에 불과한 점, 금융위원회는 이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연성규범 등을 포함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결권자문업의 등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결권 행사의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4)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rticle 3j “Transparency of proxy advisors”, (EU 홈페이지, EU-Lex)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비고
국내	한국ESG기준원 (비영리법인)	2002년	2012년부터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한국ESG연구소 (민간연구소)	2021년	2014년부터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서스틴베스트 (민간경영컨설팅법인)	2006년	2013년부터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민간경영컨설팅법인)	2022년	2023년부터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해외 주요 자문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1985년	연간 5만건 이상 주주총회 분석
	Glass Lewis	2003년	연간 3만건 이상 주주총회 분석

* 자료: 금융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04